

영등포구의회  
제2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고기판 의원 발의】



2017. 9. 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61호로 2017년 8월 24일 고기관 의원 외 5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7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통합 구체화하고, 보조사업의 결정 순위를 보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추진으로 행복한 교육환경 및 학생 권익 신장을 지원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보조사업의 범위 통합 구체화(안 제2조)

5.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삭제)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설치사업
7.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 6.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가. 학력신장 특화사업지원

나. 학교특색사업지원

다. 우수인재 및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지원

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지원

나. 보조사업의 결정순위 보완(안 제5조의2)

1.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3.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4. 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권익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기존 제2조제5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삭제하고, 기존 제2조제6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을 안 제2조제5호로 규정하였으며,

- 기존 제2조제7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안 제2조제6호로 하고, 안 제2조제6호가목,나목,다목,라목을 신설 추가하여 보조사업의 범위를 통합하고, 구체화 하였으며,

- 특히, 안 제2조제6호라목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지원”을 규정하여,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의2(보조사업의 결정순위 보완) 규정 중 제2호 내용인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를 안 제5조의2제2호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로 개정 하였으며,

- 안 제5조의2(보조사업의 결정순위 보완)제4호 “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신설 추가하였으며,

- 기존 제12조(보고 및 검사)를 안 제13조로 하고, 기존 제13조(수당)을 안 제14조로 하고, 안 제12조(보조금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 그 사무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명시하여 보조금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음.

○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학력 신장특화사업, 학교 특색사업, 우수인재 및 글로벌리더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학교, 학부모의 의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으로 학생 권익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2.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목개정 2000.12.27.]

**제4조 (보조의 신청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제5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제7조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8.]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